

내부 고발자 보호법으로 혈세도둑 잡자

최근 봇물처럼 터진 세금비리는 공직사회 부정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공직자가 부정인 것을 알면서 고발하지 못하는 '비리 불감증'을 치료할 단방약은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이다. 이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혈세 도둑을 잡아야 한다.

이문옥(전 감사원 감사관)

난해 인천직할시 북구청의 세금 횡령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세금비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새해이다.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지방세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몇 개 구청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대체별 그룹의 계열법인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주식을 장부기액보다 훨씬 싼값으로 같은 그룹내의 다른 법인에 처분하여 처분손실을 발생시켰다. 가 말썽을 빚었던 지난해를 떠올리며 세금비리와 연관된 화제가 회자되고 있다. 물론 몇년 전에 정주영씨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다가 현대 그룹이 국세청 세무 사찰을 받고 1천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당했던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말썽많은 세금비리 실태를 소개하고 세금비리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직사회 부정비리 예방대책으로서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세금비리의 실태

세금비리란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부정비리를 말한다. 먼저 지방세 횡령 실태를 알아보자. 지난해 인천직할시 북구청을 시작으로 불거져 나온 지방세 횡령액은 인천 북구청이 79억원, 부천시가 31억원이었다. 그 후 감사원이 주동이 되어 실시하였던 특별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세 횡령 등의 세금비리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횡령사건은 감사를 실시한 2백59개 기관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92개 기관에서 저질러졌고 그 규모는 40억7천만원이었으며, 유용사건은 39개 기관에서 94억여 원이 유용되었다. 또한 위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백 55개 기관에서 2백89억여원의 세금을 걷지 않았다.

② 세금비리의 유형은 다양하다. 영수증 금액을 바꾸거나, 은행의 수납인을 위조하고, 또는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세금 횡령을 하였다. 또 징수한 세금을 유용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소홀히 처리하여 과세대상에서 빠뜨리거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거나 비과세 처리한 것들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93년 이전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난 세금비리도 상상을 초월한다. 감사원이 90년부터 93년까지 감사한 결과 밝혀낸 세금비리 중 세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회수 또는 보전시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 가운데 국세청 소관 내국세의 경우를 보면,

90년 7백57억7천2백만원

91년 7백30억9천7백만원

92년 7백50억4천4백만원

93년 1천20억3천3백만원이었다.

국세 가운데 관세청 소관 관세의 경우는

90년 18억6백만원

91년 8억7천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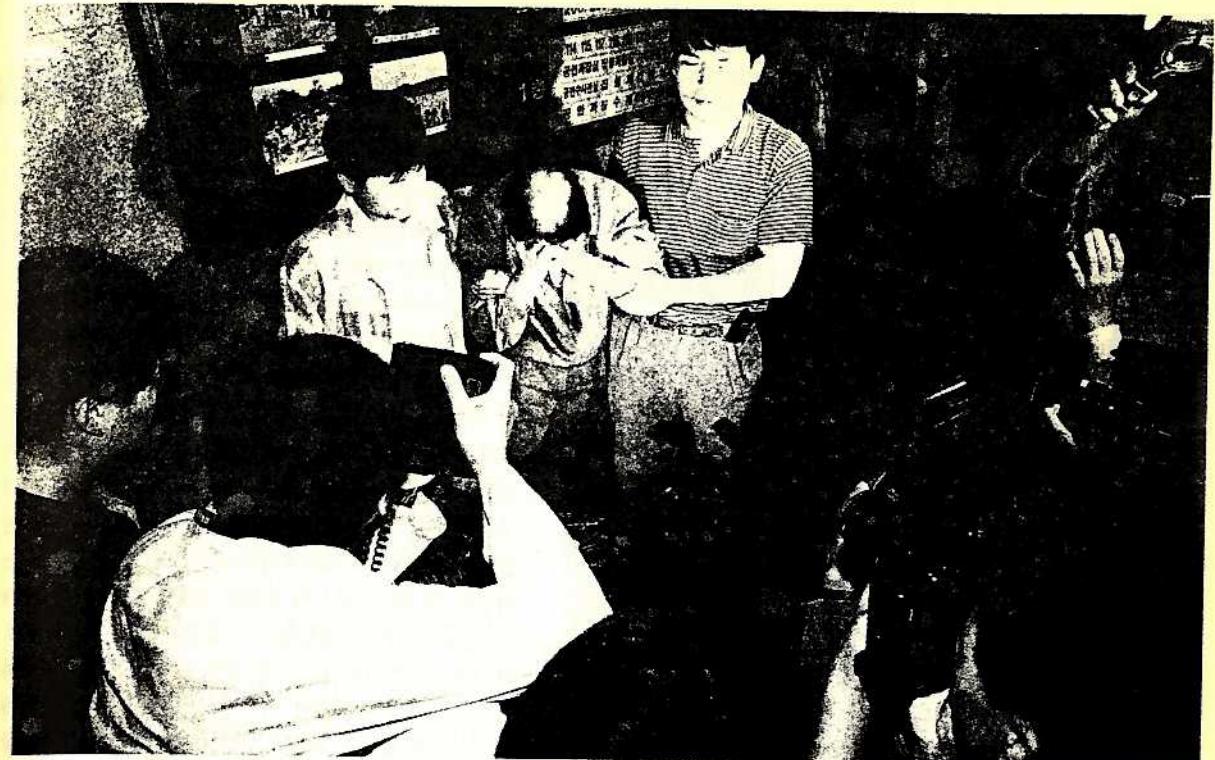
92년 25억5천7백만원

93년 8억2천8백만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세는

90년 34억1천1백만원

91년 56억2천만원



인천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의 범인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92년 1백38억6천2백만원

93년 70억1천6백만원이었다.

이들 비리 가운데 93년 내국세의 경우를 비리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과세자료 수집 및 확인 불찰자, 과세자료 활용 부적정, 수익 및 비용계산 부적정, 세율 또는 소득표준을 적용 불찰자, 과세표준 계산 부적정, 부당 결손처분 및 부당 부과취소 등 다양한 형태이며 이러한 유형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비리 사례

첫째, 전산처리 과정 및 전산자료 활용 미흡으로 발생한 사례로서 과주 세무서에서 관내 거주자 3명이 양도한 대지 1천8㎡ 등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부분을 관할 등기소장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전산 실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동업무 처리 담당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1천8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후 등기신청서 부분 4건을 과기하고 그 대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른 부분의 등기접수번호를 지우고 과기한 부분의 등기접수번호를 암기하여 전산실에 송부하는 수법으로 양도 소득세 1억3천4백만원을 면탈케 한 사실이 있었다.

둘째, 영등포 세무서에서 영등포구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등기신청서 부분을 보완하면서 취득가

액 산출에 필요한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을 다르게 기재하여 전산실에 송부함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인 강서 세무서에서 전산 출력된 과세자료대로 처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억1백만원을 부족하게 징수 결정한 사실이 있다.

셋째, 종로 세무서 외 1백24개 세무서에서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재산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토지·건물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소득 등 원천소득이 있는 체납자 7천8백 96명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등 5백63억6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다.

넷째, 과세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례로서, 반포 세무서에서 관내 법인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한 주식 4만 주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상호신용금고의 부채 증명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증여세 등 7억4천만원을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비리는 공무원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횡령의 경우와 공무원이 납세자와 공모하여 저지르거나 납세자가 지능적으로 서류를 조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내부지가 부정비리에 관한 내용을 고발하였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작하고 공무원이 묵인 또는 간과함으로써 저지르는 부과 징수에 따른 세금 누락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감사에 의하여 밝혀진 세무비리보다 밝혀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세무비리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비리가 계속 발생해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정비리가 차단되지 않는 이유

공직사회에서 세무비리 등 부정비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의 본분을 막강한 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다. 이는 헌법과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은 누구나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그 본분을 지킬 것임을 선서로 약속한다.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써 직무에 전념한다”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는 등의 내용을 원손을 들고 기관장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사나 하급자 또는 동료들의 부정비리를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것 역시 국민의 편에 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던 약속과,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본분을 막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본분을 막강한 공무원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감사원부정방지위원회가 한국 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조사 발표한 ‘공무원의식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4급부터 9급 공무원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속한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폭로할 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이 79.5%,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무원은 따돌림당하는 풍토가 있다”는 답변이 64.4%, “부하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상관이 이를 문제하기보다는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답변이 61.9%, “부서의 관행이 부정한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을 문제삼아 동료 또는 상·하 공무원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81.2%였다.

이 조사 결과만으로 볼 때 많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며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식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뿐만 아니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는 특별히 용기 있는 공무원이 나타나서 부정비리를 제보하지 않는 한 적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내부자가 부정비리에 관한 내용을 고발하였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는 정부의 계속된 사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점차 지능화·구조화되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관례화되어 있는 부정비리를 목격하고도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기존의 사정활동이나 제도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차단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사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는 사정제도의 보완 대책으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 법은 여러 단체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입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94년 5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나라 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전국불교운동연합’ ‘군인·전경 양심선언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8일 ‘참여 민주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회의’(참여연대)가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다. 이어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동법률의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12월 8일 ‘감사원부정방지위원회’가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부정부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제 발표문이나 토론의 주된 내용이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이었다.

이 법은 양심 있는 다수에 의하여 상시적인 부정비리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부정비리는 은밀하게 진행되어 노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부정비리가 사정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되더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일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인 내부자를 활용하여 부정비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이 법은 체계적 부정비리나 제도화·구조화된 부정비리가 만연된 경우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아름 아닌 내부 공무원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비리의 통제 주체도 공직사회에서 매일 생활하는 공무원 자신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 정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부정비리 척결에 의한 개혁을 주장하고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를 한다고 해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심적인 다수의 눈이 항상 번뜩일 때 부정비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은 공무원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은 부정비리에 대한 억제 목적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개인의 양심과 정의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내 구성원의 양심과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양심적인 조직 구성원이 조직내의 부정의에 회생당하거나 부정비리를 목격하고도 저항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많은 양심 있는 조직 구성원이 목격한 부정비리를 외부에 고발하였을 때 조직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위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접어두고 불의에 태협하게 된다. 개인의 양심과 정의가 조직의 불의로 인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을까? 불의에 침묵하기를 강요받은 내부 양심적인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 법이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부정비리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의 재산공개제도, 금융설명제, 옴부즈맨 제도 이외에도 특별히 내부고발자보호법과 부정고발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신고·제보자에 대하여 보호할뿐만 아니라 포상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보호법이 가장 강력한 부정비리 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도 고발·신고·제보한 자에 대하여 보호뿐만 아니라 장려·포상까지 하는 제도를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 부정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공무원이 부정비리 제의를 받을 경우 그러한 제의를 한 사람을 직접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있다.

공직사회 덮어주기 관행이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해 인천직할시 북구청과 부천시에는 불거져 나온 지방세 세금비리가 그 후 감사원에서 감사한 2백5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퍼져 있어 횡령금액만도 1백50억원이나 되며, 그 외에도 세금유용 등 많은 부정비리가 있었고 매년 감사원이 감사 결과 나타난 국세와 지방세의 비리는 7백80억 내지 1천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서의 관행이 부정한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을 문제삼아 동료 공무원 또는 상·하 공무원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기존의 사정활동과 제도로는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차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사정활동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 법은 양심 있는 다수에 의하여 상시적인 부정비리 통제 장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부정비리 척결에 의한 개혁을 주장하고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를 한다고 해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양심적인 다수의 눈이 항상 번뜩일 때 부정비리는 움츠러든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회 : 권진관 부소장(성공회대 교수 · 신학)

I. 인사말

II. 주제 발표

1.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입법 청원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한 소개	2
박연철 소장(변호사)	
2.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자보호법이 갖는 의미	7
윤태범(서울대 강사 · 행정학)	

III. 토론 23

이문옥(前 감사원 감사관)	
강경근(승실대 교수 · 법학)	
안재희(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원웅(민주당 국회의원 · 정책위 부의장)	

IV. 별첨 25

- ◆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청원서
- ◆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기대효과 및 특징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타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법안 성안에 참여한 위원>

박연철(변호사,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타 소장)
박홍식(중앙대 행정, 위센타 부소장)
권진관(성공회대 신학, 위센타 부소장)
백승현(변호사, 위센타 전문위원)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호석(아주대 행정, 위센타 전문위원)
윤태범(행정학 박사, 위센타 전문위원)
이남진(변호사, 참여연대 상설변호인단)
이문옥(前 감사원 감사관)
한준수(前 연기군수)
조희연(성공회대 사회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경환(위센타 간사)
박원석(의정감시센타 간사)



28일 이문옥 감사관(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연철 변호사(맨 왼쪽)
가 국회 사무처에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법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
다.

한겨레 신문
90.10.29
일원호 기자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입법청원

참여연대, 국회제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
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
·오재식)는 28일 구조적 비리에 대
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고발자
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비리 제보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청
원서를 민주당 김원기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33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청원한 법률안
은 △감사원에 내부비리 제보 접
수 및 조사를 맡는 전담부서 설치
△비리를 발견하거나 제의를 받은
공무원의 고발 의무 명시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그 적용대상으로 공직사
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 사회단
체도 포함하도록 했다. 백기철 기자

「내부非理제보자」 보호法 추진

참여연대

공무원의 고발의무 등 담아

부정부패 고발하는 암심
적인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내부비리제
보자 보호법」을 국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

장△비리를 발견하거나
제의받은 곳을 월의 고발의
무△감사원과 내부비리조
사처리법부서 신설△
내부비리제보자의 포상을
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단체의 내부비리고발
자지원센터 소장인 차淵微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은
폐된 구조적 비리는 내부
자의 제보없이 해결되거나
힘들다며 이런 협상을

서부정부패를 흐파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부제보자
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
하다고 판단, 입법청원하
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출신 이 법률
안은 △청원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 서명작업
(현재 33명) △입법화
개최 △국회법사위 법안심
의모니터 △「양심선언자」의
발언자 △시민서명운동
활용을 떠나가기로 했

동아일보 94년 10월 29일

검은 돈 '먹이사슬'은 안에서 끊어야

참여연대·민주당,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안’ 마련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안'을 국회입법민원과에 제출했다.

부패를 방지하려면 내부비리고
발자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송월주, 권태준, 손봉호)’도 줄곧 이 법제정을 요구해 왔고 최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와 민주당도 법안을 마련해 입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민주당 33명, 민자당 1명) 국회 입법민원과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신고, 제보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는 비리 제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의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공무원이 비리와 관련한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또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감사원은 내부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감독기관은 제보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칭찬안은 비리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또 비리 때문에 빚어질 손실 또는 손해를 사전에 제보함으로써 막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5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리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의 인멸, 온니 등의 수법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부하거나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수법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24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평
가는 현재로선 둘을 시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이 접수되면 세부적인 사
례에 대해 검토를 할 뿐 지금은
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입장
명에 나섰을 표했다.

경찰공무원인 문모씨는 남
일에 참견하기 싫어하는 국
서와 30년 이상 위아래로 뛰어
는 관료사회의 부패구조가 끌
려 있는 상황에서 내부지지와
고발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
며 “내통경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

그는 또 중간급 이상의 관찰
어떤 식으로든 이 법안을 반대
고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육씨(전 감시원 김세환)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이 통과
부 초기에 바로 제정됐다면
번 성수대교 사건은 미리 막
수 있었다”며 “현재 정부의 는
는 불의에 침묵하거나 복종하
을 강요하는 듯이 보인다”고
국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한 공개 입법공청회를 갖고
민 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또
내부비리고발 접수 핫라인(0
41-028)을 개설해 신장을 시장에

관료사회의 두텁기만 한 부
의 벽을 어울게 무너뜨릴 것은
는 '김영삼 정부'로서는 뜨거
김자' 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
황에서 정부가 '부패학살'을 한
한 실질적인 재도를 헤쳐가는
간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도망
처방에 반응할 것인지 궁금한

이같은 '부채방지'와 관련한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입법 청원

참여연대, 서울시의회에…“대형사고 근본예방 위해 절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참여연대·공동대표 김종배 등)는 16일 대형사고 예방 등 공익을 위해 내비리를 고발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해 줄 것을 울시의회에 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
위험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
· 사고 관련시설 내부인이지만
확한 법적 보호망이 없는 상태
서 보복 등이 무서워 침묵하는
우가 많다"면서 "대형사고 등의
본적인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여연대가 제안한 조례안은 □
을 위협하는 사항, 법령 위반
에, 부정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
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
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보자를 불이익 처분했을 때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며 △ 기관은 조사하는 동안 제보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비리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안) 입법을 국회에 청원한
으며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류중이다. 솔직한 기자

95.10.12 토(설례)

내부非理 제보자 보호

참여민주 사회시민연대
[공인통대표 異童培]는 16일
공익정보제공자보호법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의회에 내부비리 고
발신자를 보호하는 취지다.
조례제정청원이 제출된
온 이번이 처음이다. 지

참여연대

자치법 제65조는 지방자치법
의원의 소개로 조례제정권을
에 대한 청탁금지, 가족집단도
특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장과 서장자 우편
文서의 경우 통제 제한하는
조례제정권은 「고용자는
고용인」이 시민의 전자우편
안전을 보호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부서장으로 판한
장보를 청탁금지 법률은 제공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대
우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결자로 하고 있다.
참모단장은 조례제정권
원인 양식 지침에 「부모
리 제도자 보호를 위하여 관할
법률」을 규정한 입장문
제작되었다. 이 입장문은 현재
제작되었다. 이 입장문은 현재
○아울러 朴淵徵변호사
는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서울시 자치입법권
에 의해 조례제정이 가능하
것으로 보되고 말았다.

94.11.12. 시민의회

'정의의 호루라기' 법보호 절실



대형비리 내부고발 없인 규명 불가능 제보익명성 보장 책임까지도 면해야

〈42〉

부패방지법 제정 3

내부고발보호법 토론회

우리 사회의 대형 비리사건들은 대부분 내부자의 양심선언을 통한 고발을 통해 알려져 왔다. 윤석양 이병, 이문우 감사관, 한준수 연기 군수, 상운고 교사들을 비롯해 최근 효산큰도 감사비리를 폭로한 현준 회 전 감사원 주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양심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들 대부분은 기밀누설 등의 죄명에 '배신'이라는 오명까지 써워져 해직, 파면, 불명에 제대의 길을 걸었다. 내부고발자들의 의로운 행동이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21일 저녁 6시30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중앙대 국가정책 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 '내부고발자 왜 보호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계동 전 국회 의원, 박홍식 중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문우 전 감사관,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이용규 중앙대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고질적인 사회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회생을 감수한 양심 선언자들의 사회적 공헌도를 재평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동서고금이 마찬가지다. 한 조직의 내부규율을 어기는 배신적 행동으로 간주돼 조직의 철저한 보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끝까지 팍팍을 받았던 그 고작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축협의 군납비리를 폭로했던 인천축협 김민우씨

이 별다른 징계 없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데 반해 자신은 폭로의 대가로 부당한 징계를 받고 전근까지 강요당했다. 권원선거를 폭로했던 한 준수 전 연기군수 역시 오히려 비리의 주역으로 몰려 그가 고발한 사람보다 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효산큰도 특혜사건이 외압으로 감사를 중단했다고 양심선언한 감사원 현준회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비도덕적 행위로까지 치부되면서 외면되는 사회에서는 작

은 집단들의 이기주의와 비리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회공동체에는 키다란 구멍이 뚫리게 마련된다. 한 집단의 내부에 존재하는 비리 매커니즘을 외부사람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회 공공선의 확보를 위해서 이들의 행동을 보호하는 것은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무역거래까지 연계한 세계적인 부패와의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긴요한 무기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이다. 부패와 비리에 저항하는 외롭고 바쁜 '전사'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그 전쟁에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방사능 누출, 유독물질 배출,

불량 식품·의약품 등의 전문적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내부고발자 보호에서 가장 큰 권익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관리주체자가 결함을 통보받았을 때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아무런 보호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고발의식을 고무시키는 한편 사고시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리공개에 앞서 그 시점을 위해 최대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람에 한해서 보호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 박계동 전 국회의원=내부고발이 없었다면 노태우 4천억원 비자금 사건은 영원히 땅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비자금의 결정적인 증거를 인 예금잔고조회표를 제공해준 사람은 김신설 신한은행 수지지점 서장이었다. 그는 비자금사건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는 점과 자신에게 돌아온지 모를 불이익의 부담을 감수하고서, 잔고조회표를 제공해 주었다. 또 서울시청 앞 센터빌딩의 소유자였던 재일동포 하경완씨 가족들의 고문은 정부와 검찰의 축소수사 물体质을 막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들은 감찰이 비자금 규모를 1천억원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보이자 노태우 대통령 재직시 서울 1천억원을 호기하는 센터빌딩과 경동주차장 7백평을 노씨와 사돈에게 동방유랑에 1백70억원의 합격으로 빼앗기다시피 한 사실을 제보해 왔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내부제보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오히려 내부고발자들을 금융설령제 '위법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통법리를 들먹이며 사건 축소·은폐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당시 신한은행과 삼업은행 관계자를로부터 4천억 모계좌의 실제를 확인하는 제보를 여러 건 받았으나, 대부분 나중에 생길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공중전화를 이용한 익명으로 보여서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만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있었다면 4천억 모계좌를 드러내는 많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대형금융비리 사건은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와 고문이 없다면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리/한국언론재



내부고발자 보호집자는 부정부패방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 21일 오후 서울 중앙대학교에서는 참여연대와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공동주관으로 '내부고발자 왜 보호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이진호 기자

미국·대만은 고발자에 상금도 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1989년에 제정된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2조에서 '정부의 불법, 낭비, 부패를 폭로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일은 좀더 효과적인 행정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기관내의 부정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으로 △공무원이 불법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기절 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고발한 뒤 법적 입

증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다른 부서로 이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여기에 내부고발자의 보복성 인사발령 등을 막기 위해 '실적주의의 보호위원회'가 대통령과 의회의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내부고발 문제의 청문, 제재 결정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기관내의 부정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으로 △공무원이 불법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기절 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고발한 뒤 법적 입

방정부에 기업을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서 승소해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부당이익을 환수하면 한수액의 15%를 고발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만의 경우 '동원감시기기징치답오조례' 등의 입법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처럼 고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도 누구든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일개 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보자의 신원노출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언론재

KIA 기아자동차

4. 사회활동 주요 자료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자료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나라사랑양심선언자 모임을 위한 준비모임

일시 : 1992. 10. 2

장소 : 운서양후원사업회

참석자 : 이문옥, 양승근, 연성호, 서영완, 유성호, 황인진

1. 보고

- 1) 3.24 총선에서 관권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음을 밝힌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이후의 경과와 한준수 씨의 구속을 계기로 9월 10일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던 양심선언 공무원·군인·전경 시국선언에 대한 보고
- 2)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던 운서양 이병이 9월 22일 기무사와 현병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어 구속된 경위와 운서양 이병 석방문제 진행사항 보고
- 3) 시국선언 이후 진행됐던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준비사항 보고

2. 결정사항

- 1) 양심선언자 모임의 목적
 - 본 단체는 공무원, 군인, 경찰이 정치적 중립 및 인간적 삶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양심선언 모임의 회원자격.
 - 양심선언 공무원·군인·경찰에 해당한 자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선언자들은 본인의 의사를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군인·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강령의 바탕 행사를 이해 노력한 사람은 회장, 총무국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 3) 양심선언자 모임 운영체계
 - 양심선언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과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을 둔다.
 - 약간명의 고문과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양심선언자 모임을 위한 준비모임 회장에 이문옥 전 감사와 총무국장에 양승근씨로 한다.

- 고문 영입과 법률자문위원 영입은 회장·총무국장에게 위임한다.
- 4) 양심선언자 모임의 재정 마련 방안
 - 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낸다.
 - 고문은 월 2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낸다.
 - 법률자문위원은 월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낸다.
 - 각종 수익사업과 공무원·군인·경찰 등의 국민성금으로 한다.
- 5) 양심선언자 모임의 결성 시기
 - 1992년 10월 19일로 한다.
- 6) 양심선언자 모임 사무실
 - 독자적 재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운서양후원사업 사무실을 쓴다.
- 7) 기타
 - 사업계획은 회장, 총무에게 위임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사회적 부정의가 수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 무서움의 출발이 공직자들의 부정의가 수화되고 있다. 무서움으로 성장한 저율법과 부정비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다. 공직자들은 공직자와 타당한 배권력의 비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뿌리내리면서 끊임없이 봉사를 공직자와 타당한 공직자들의 품성을 낮았고, 이러한 공직자들의 부정의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실현조차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썩을대로 썩은 사회 부정의의 정치적 강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양심의 행동에 키다란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근본적인 사회 부정의의 해소와 이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은 먼저 공직자들의 도덕성 회복과 국민을 위해 투사하는 정직한 공직사회의 전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저며온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대변할 수 밖에 없었던 공무원, 군인, 경찰들이 자신들을 병들게 만들었던 지배권력의 무당한 평생과 노예적 금속에서 벗어나 차주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속면에서도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의는 공직자가 나서서 척결해야 한다.

• 나라사랑 충남군민의 시원한 떠나는 삶의 풍물

우리는 먼저 공무원, 군인, 경찰의 성시식을
법과 무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안사(현 기무사)의 대 국민 놀법사설, 감사관 미리, 내내식인 군 부재시 투표부정과 관권 부정선거등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공직사회 건설에 있어서 공무원, 국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는 사회 부정의의 해소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양심적인 공직자와 국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둘째로 공무원, 군인, 경찰들의 도덕성이 높아져 그들의 일감식이 자주적인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지배권력의 불법적 행위와 부정비리를 도맡아 처리해 오고 있다. 이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일정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법 부정행위를 국민들에게 자행하게 됨으로서 국민들의 빠가문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상관이나 권력자들에게는 눈치와 아무 속에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직사회의 부정비리가 일정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이를 책임져야만 하는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충립과 더불어서 공직자들의 양심과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며 더나아가 인간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위해 그들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할을 주장한다. 모든 공직자에게는 상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과 거부권이 주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당한 처우나 보복적 탄압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기무사(전 보안사)의 녹화사업, 정치공작속에 프락처 활동을 하거나 기무사의 정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임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 또한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있는 전투경찰의 임무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이 되어야 하며 권리 침탈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인들도 「신분」(즉 일간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재소자들도 자유롭게 보고 있는 신문을 군인들만 봇보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인들은 단지 표만 찍는, 투표하는 기계가 아니다.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당의 공약이나 후보,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군인들도 자유롭게 신문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군 당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장해야 한다.

우리는 샌짜로 공직사회의 불법과 부정비리를 꼭로한는 양심선언자나 건강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등에 대한 성시 보복적 퇴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정부의 철학은 그들이 원하는 그 학제적 관점에서 '임시회'에 있는 「저항권」에 해당하며 이는 또한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행위이다. 양심선언을 위한 기타의 행동(탈영등등)은 '임헌주의적 혁명질서를 침해, 파괴'하고 있는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국민 앞에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으로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양심선언자의 수배생활은 공권력의 보복적 탄압을 모면하기 위한 「진급피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사업계획

난으로서 이또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은 그 내용의 진실여부나 사회공익에 비추어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이러한 양심선언자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공직사회 내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선언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불법과 부정비리를 쪽로한 내용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양심선언을 하고 수배중인 사람들에 대한 조속한 수배해제와 무당하게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공무원, 군인, 경찰의 완전한 충립화의 실현과 공직사회의 부정의 적결, 그리고 공직자의 인간적이고 자주적인 삶의 실현 및 양심선언자의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건강한 공직시회의 건설로 이어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 군인, 경찰의 단결된 힘으로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노력에 이바지 하며 국민들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1992년 10월 19일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현실조건에 대하여.....

지난 3.24충선시 군무제자투표 과정에서 국가기로, 대리우보수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음을 밝힌 청년장교 이지운 중위가 이원섭 일병은 「양심선언」을 계기로 공무원, 군인, 경찰등 공권력 행사기관의 선거개입과 정치적 수법 여부가 범국민적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뒤이어 터져나온 전 인기군수 한숙수치의 양심선언은 일에서 일으로만 전해지던 관권부정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 것이다.

1. 사업기조

양심선언 모임은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치적 충립의 실현과 공무원, 군인, 경찰이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며 한 인간으로써 자주적 삶을 살수있도록 지원하며,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쪽로하는 양심선언자의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과 양심선언 내용을 실천하며, 특히 대통령선거 기간중 적극적 활동을 한다.

2. 사업계획

1) 공무원, 군인, 경찰의 상담전화 및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 사회단체나 정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양심선언 전까지는 공무원, 군인, 경찰이었던 입장에서 이 공직자들이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을 상담하며 법률적 도움을 준다.
- 대선기간 중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관권개입 압력을 받거나 실행에踏겼을 경우 신고를 받는다.

(전화 : 765-3323)

을 위한 흥보

X 아니지 <공무원, 군인, 경찰이 실천요령(포스터 10면부 장서)
○ 모든 <○ 공무원, 군인, 경찰의 실천요령을 담은 포스터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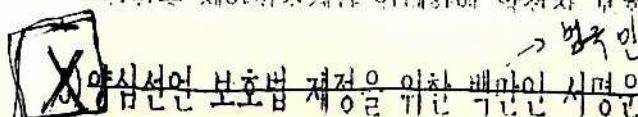
- 공명선거와 양심적 공무원, 군인, 경찰의 실천요령을 담은 포스터를 작성한다. 이 포스터는 민주화세력 힘의 하에 전시된다.

3) 부당한 명령거부운동

- 부당한 공권력과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한다.

4) 양심선언자 보호법 마련

- 미연동 재야민족개인 인데하에 악선자 보호법을 마련한다.



- 양심선언 보호법 제정을 위한 배마인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 종교단체와 양심세력과 인데하여 진행한다.

* 고문 : 金榮國(전연세대 부총장, 한교집권단원 위원장)
송월주(공선협 공동대표, 불교민권회 회장)
유한석(애국군인상심사위원장, 치료사)

* 법률자문 : 해마루법률사무소(현정례, 임승연, 이익우)

* 회장 : 李文玉

* 총무고장 : 柴承均

1. 양심선언 고문의

1) 李文玉 감사관

- 일시 : 1990. 5. 11
- 소속 : 감사원
- 양심선언 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원 독립
- 기타 : 구속된 후 석방되어 경실련에서 활동

2) 박동렬 동장

- 일시 : 1991. 1. 5
- 소속 : 복포시 안동 동장
- 양심선언 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소액기부 실시

3) 韓復洙 군수

- 일시 : 1992. 1. 5
- 소속 : 연기 군수
- 양심선언 내용 : 3.24 총선시 부정관권선거 쪽로 및 지방자치제 실시 주장
- 기타 :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

2. 양심선언 군인

1) 정경민 일병

- 일시 : 88. 6. 8
- 소속 : 수방사 현병단 31중대
- 양심선언 내용 :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학살군대로의 전환,
6.10 난투학살죄로 서민 61명 모임에 참여, 6.10 미곡축출과 농재성위 타도

- 구속일 : 89. 6. 3
-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근무지 이탈)
- 형량 : 2심-징역 4년
- 수감지 : 원주교도소
- 만기일 : 93. 6
- 현재상황 : 수감중
- 기타 : 강릉대 독문과

3. 이지운 대위

- 일시 : 89. 1. 15
- 소속 : 30사단
- 양심선언 내용 : 군대 민원수복, 민원부록 평생 금지, 군사기밀 침해죄 혐의로 충주, 군사 보안과 유통과 충주군 고성면 고성포로 150m 을 출발

4) 구속일 : 89. 1

- 적용법규 : 국형법
- 현재상황 : 회부 체류에 재판

5) 세양관 일병

- 일시 : 89. 4. 17
- 소속 : 23사단 3291대
- 양심선언 내용 : 국보법, 충북법, 충남법 혐의, 군사기밀 침해죄, 국방부 충남 교육 실서, 민관, 사장, 축복, 집합의 자유로운

6) 구속일 : 89. 4. 25

-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근무이탈)
- 형량 : 징역 3년, 사단장 선고 징역 1년

7) 만기일 : 91. 11. 2

- 현재상황 : 출소
- 기타 : 충남대

8) 4) 류범희 이병

- 일시 : 89. 5. 12
- 소속 : 32사단
- 양심선언 내용 : 충성관련 금지, 정치행동도 폐지

9) 구속일 : 89. 1

-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
- 형량 : 징역 1년

10) 수감지 : 원주교도소

- 만기일 : 91. 1. 31
- 현재상황 : 출소
- 기타 : 충남대

11) 이지운 중위

- 일시 : 92. 3. 22
- 소속 : 9사단
- 양심선언 내용 : 3.24 광복기원 충민기사 군 무예자 수료증 및 축도

12) 구속일 : 92. 3. 24

- 적용법규 : 군형법(근무이탈), 평생금지처
- 형량 : 이승만장군 평생대 재판
- 현재상황 : 재판

3. 양심선언 전거

1) 柴承均 상경

- 일시 : 89. 7. 8
- 소속 : 경기도 이천 경남서 태극대
- 양심선언 내용 : “복재에 고침”- 긴장해제, 강남민주화 촉구
- 구속일 : 89. 7
-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전성대설치법

- 성당 : 정액 1년6월, 상고기작

- 수감지 : 진주교도소

- 만기일 : 91. 4. 12

- 현재상황 : 출소

2) 延慶欽 일경

- 일시 : 88. 1. 23

- 소속 : 서울시경 30중대

- 양심선언 내용 : 전경해체, 국민의 경찰 촉구

- 구속일 : 89. 6

- 적용법규 : 국보법, 전설법

- 형량 : 정액 1년6월

- 수감지 : 진주교도소

- 만기일 : 90. 12. 14

- 현재상황 : 출소

- 기타 : 감신대

3) 임기철

- 일시 : 88. 6. 8

- 소속 : 지안본부 기동대

- 양심선언 내용 : "대한민국 경찰대에 고양"-전설법 폐지, 전경해체

- 만기일 : 89. 4

- 현재상황 : 출소

4) 노재학 상경

- 일시 : 88. 6. 24

- 소속 : 서울시경 동대문지구대 8중대

- 양심선언 내용 : 조국의 자주, 민주, 봉일 촉구, 전경해체부정 촉구

- 구속일 : 89. 6

- 적용법규 : 국보법, 전설법

- 형량 : 2심-정액 1년6월

- 만기일 : 90. 12. 18

- 현재상황 : 출소

5) 蔣元鉅 수경

- 일시 : 89. 5. 8

- 소속 : 서울시경 제3기동대, 사복제포조(백화점)

- 양심선언 내용 :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민주화, 5공 정치권력형 간부직질, 동의대 참사 책임지고 내무장관, 부산시경국장, 관할경찰서장 회진을 요구하고 평민당사에서 단식농성

- 적용법규 : 전설법

- 형량 : 정액 1년6월, 집행유예 2년

- 현재상황 : 석방후 불법에재대

6) 이상철 수경 : 위와 동일함

7) 유성호 수경 : 위와 동일함, 자대경개우-재대

8) 이한수 일경

- 일시 : 91. 12. 1

- 소속 : 천안경찰서 2610전경대

- 양심선언 내용 : 전부경찰대 해체, 쌀수입개방 저지, 전시접수국지원법 철회 등 촉구.

- 구속일 : 92. 3. 7

- 적용법규 : 군정법(군부이탈)

- 성당 : 2심-정액 1년6월(집행유예기간 포함 총 정액 3년)

- 현재상황 : 수감중

- 기타 : 충남대

나랑시경 양심선언자 모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107-2 효제빌딩 4층(110-480)

전화번호 : 766-8828

은행계좌번호 : 국민은행 000-01-0527-541 이문숙

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 규약

제정/1992년 12월 1일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명칭) : 본 단체는 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國愛 證言 선언자 모임)이라 칭한다.
- 제 2 조(소재) : 양심선언 모임은 서울특별시에 그 소재를 둔다.
- 제 3 조(목적) : 본 단체는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시적 충돌을 신인하고 그들의 인간적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사업) : 본 단체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정시적 충돌을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한다.
 2. 공무원, 군인, 경찰이 본인의 업무와 역할을 찾아 자수적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공직사회의 불법과 부정비리를 쪽으로하는 양심선언자의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과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제 2 장 회원

- 제 5 조(자격) : 회원은 성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 :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 경찰 중 본단체의 목적에 찬동하고 각종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은 개인로서 제출함과 동시에 준회원 자격을 갖는다.
 2. 성회원 : 준회원에서 본 단체가 제시하는 소상의 주석문 거친 사람중 회장, 총무의 주신으로 선체회의에 서 결정된다.

- 제 6 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단체의 활동전반에 참여 할 권리와 갖는다.
 2. 본 단체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와 갖는다.
 3. 회의에서 발언권, 의견권, 신거권, 퍼신거권을 갖는다.
 4. 회의에 따르고 각급회의 결정을 순수아이야 한다.
 5.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하고, 회원으로서譽무를 지켜야 한다.

- 제 7 조 (징계 및 복권) : 본 단체의 회칙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선체회의 결의로 징계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과 회의

- 제 8 조 (조직구성) : 본단체는 총회와 회장, 총무등을 두며 총회의 결의를 기쳐 기구를 신설, 통합, 폐지할 수 있다.
- 제 9 조 (총회) : 총회는 본 단체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규약개정
 2. 고문, 회장, 법률자문위원 선출
 3. 예산결산, 사업계획 및 활동에 관한 심의 의결
 4. 회장·부진임
 5. 본 단체의 해산
 6. 기타 내규에 따른다.
- 제 10 조 (고문과 법률자문위원) : 본 단체는 필요시 약간명의 고문과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 활동의 지도 및 지원에 응한다.

수신 : 국회의장

제 목 :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첨부 :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성명 :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인)

소개의원(대표) : 강철선



의 32 인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명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년월일	1994. 10. 28.

소개의견

-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건, 동아건설 비자금 조성,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인천 올림포스 호텔 슬롯머신 업소의 판내 기관 정기적인 뇌물공여, 그 외 전국에 걸친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더 이상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이것은 중단 없는 사정과 개혁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의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은폐된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는 대부분 양심적인 내부비리제보자의 고발에 의해 드러나고 있으나 부패척결을 내세우는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조직의 보복과 각종 불이익 조치뿐이었습니다.
- 이러한 현실은 사회 곳곳에 뿐만 아니라 있는 부정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내부비리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은 물론 양심적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 그리고 이 법률안이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되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강철선



청원서

청원제목 :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첨부 : 법률안 1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1994. 10. 28.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 Human Rights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 796-8364, Fax : 796-8366, Hitel/Pc-Serve ID : rights

1. 제안이유

가. 대규모적이고 구조적인 부정이 계속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규모가 커지고,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부패방지 제도가 현저히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내부비리의 제보자의 보호는 구조적 부패에 특히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구조적 부패에 거부, 항의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 부패척결을 내세우면서도, 부패를 막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다. 정부의 사정활동이나 조사, 수사가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에 의하여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비리 사건이 밝혀지는 것은 대부분 내부제보자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 이들이 현실적인 보복이 두려워 도중에서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부정을 보고 신고하여도 보호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도덕적인 인사가 해고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과 시민들은 투서와 같은 익명이 아니면 제보, 신고할 수 없는 법제도하에 놓여 있다.

라. 미국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금융실명제, 음부즈만제도 이외에도 특별히 내부고발자보호법, 부정고발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 신고, 제보자에 대하여 보호뿐만 아니라 포상까지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가운데, 현재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마. 자유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홍콩 등에 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자유중국은 고발, 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의 제공뿐만 아니라 장려 포상까지 하는 규정을 갖고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의 경우도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공직자가 부패제의를 받은 경우, 그러한 제의를 한 사람을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있다.

2. 주 요 골 자

가.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밖에 보고, 신고, 제보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나. 감사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의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또한 감사원은 그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보자는 새로운 이유 등을 들어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이 비리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

마. 적용의 대상에 민간기업체, 사회단체의 내부비리까지 포함되도록 함

바. 내부비리제보의 접수 및 조사의 주체는 감사원으로 함

사.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내부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 단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자를 말한다.
2. '비리'라 함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 또는 제반 법령을 위배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를 제보하는 행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공개의 이익이 큰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 조 (적용의 예외) 내부자가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보하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제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제보처리기관 및 조사방법)

제1항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제2항 감사원은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감사원은 제보내용과 관련된 문서 기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질문서에 답변하게 하거나 구두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된 제보의 조사를 각 감독기관

및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항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직접 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의 비리에 관하여는 감사원은 해당 주무부서에 조사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보의 방법)

제1항 내부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감사원에 제보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보자는 성명, 주소, 연령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더불어 조사대상, 효과적인 조사방법, 비리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⑦ 조 (내부자의 성실의무) 내부비리제보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에 정하여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내부비리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제보행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부득이 내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⑧ 조 (신변의 보호)

제1항 조사기관은 내부비리제보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 후에도 제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원이나 조사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고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

제2항 감사원은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⑨ 조 (신분의 보장)

제1항 내부자는 비리를 제보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

보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감사원은 조사기간동안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조사기간동안 또는 조사후 제보자 본인이 전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⑩ 조 (불이익의 입증책임)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감사원 이외의 기관에 대한 제보자의 보호)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를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감독기관에의 신고 또는 보고,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보호를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제⑪ 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1항 조사의 결과는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취한 조치와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 감사원은 조사의 결과 비리의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할검찰에 이를 고발하여야 하며, 비리행위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감독기관에 대하여 비리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⑫ 조 (재조사의 요구)

제1항 제보자가 감사원의 조사결과통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재조사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책임의 감면) 내부비리제보자가 비리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그 징계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 15 조 (공무원의 비리제보의무) 공무원은 내부에서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리를 강요받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포상) 내부비리제보에 의하여 손실의 방지 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거나 현저히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위계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자
3. 제8조 제1항, 제14조를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신 : 국회의장

제목 :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3부

3. 청원서 3부

4. 참고자료 : 부대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옹기 (국회의원 151명 외 총 23,524명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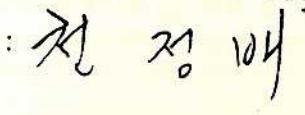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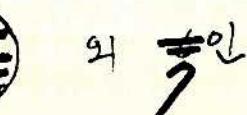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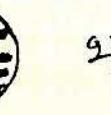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7-8200 / 전송 : 797-7412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창 국

소개의원 :   외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창국)
건명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소개년월일	1996년 11월 7일

소개의견

1.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노력이 반드시 공평하게 평가되고 보상된다는 믿음을 갖고 삶을 영위 할 수 있으려면 부정부패가 엄하게 다스려지고 지워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문민정부가 들어선 아래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개혁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작업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조항, 공직자윤리법, 형법상의 관련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물수특례법 등이 있으나 부패관련 개별법규들이 산만하게 나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 자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적용과 부패행위 처벌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고, 돈세탁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등 부패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3. 따라서 그동안 부폐방지를 위해 고안되었던 여러 법적인 조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폐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폐방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폐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두전직 대통령이 부폐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크고작은 공직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직부폐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통합적인 반부폐법제의 도입이 요청되는 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부폐방지법은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되었던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을 통해서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던 돈세탁에 대한 방지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입법화하며,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상적인 제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보완신설하는 것은 물론, 공직부패에 대한 형사처벌 제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사정기구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보장할 구조적인 제도적 대안을 포함하는 종합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부폐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하며, 이 입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6. 특히 과반수이상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3만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통해 그 취지에 동의하는 뜻을 표명한 만큼 이 입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됨으로써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할 획기적인 반부폐종합법제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 창 국

의원

청원서

청원제목 : 『부폐방지법』 입법청원

첨부 : 청원안 1부

부폐방지법안

1996년 11월 7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창국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전자우편: CJM@naucom / PSPD

부패방지법(안)

1. 입법취지

가. 종합적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부패왕국'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 버렸다. 말단 공무원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총체적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왔다. 대통령이 수천억의 부정축재를 하는가 하면 부천시의 경우 하급 공직자들이 백억대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규모와 방법, 그 확산 정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면 부패추방과 사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으나 일파성 구호에 불과했고 부패의 사슬은 오히려 견고해져 왔다.

우리에게 부정부패를 규율하는 법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특정범죄기종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정공직자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뿐 아니라 안기부, 청와대 까지 부정부패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날이 갈수록 대형화, 투기화,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정의 대규모화와 부패의 보편화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구조성을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사회에 특유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들이 바로 이 심각한 부패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패추방의 중추적 기능을 행사하여야 할 사정기관 자체가 공정하고 추상같은 권한행사를 제대로 해왔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그 스스로 부패하거나 또는 부패세력의 압력과 유혹에 초연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국가적 거대사건이든 아니면 작은 규모의 토착적 비리사건이든 간에 이들 사정기관은 단호한 처단을 해 내지 못했다. 거기다가 사법부마저 엄정한 형벌을 가하는데 실패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그동안 부패추방을 효율적으로 이룩하는데 불가피한 제도들이 결여된 개별적인 부패방지법제의 무기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돈세탁방지제도 등은 부패의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불가피한 무기들이다. 부패는 언제나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해서만 그 진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패는 은폐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부패는 점점 더 교묘한 수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없이는 효율적인 부패 수사와 사전 차단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없이 부패의 청산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패방지법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부패공직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제반 형사법제와 엄정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할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제에도 큰 구멍들이 뚫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 우리가 지나지 않고 있는 부패방지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불충분한 현재의 법제를 보완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단일하고도 종합적인 부정방지법이 절박하다. 부패방지를 위한 단일법제가 법체계상 무리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의 법률에 모든 부패 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함됨으로써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단일하고 종합적인 부정방지법이 부패추방에 매우 효과적임을 외국의 입법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부패의 사슬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계화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의 비자금사건은 국제적 망신과 한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중폭하고 있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은 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부패추방을 위한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법제로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패예방과 추방의 제도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의해 입법화됨으로써 우리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거부정, 건전하지 못한 정치자금수수의 관행과 정치문화, 행정정보의 공개와 규제행정의 완화, 각 부처의 자체감사기능의 강화, 부패 소지가 많은 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제의 도입, 부패의 근원적 방지로서의 공직자의 생활 보장, 계좌추적권의 부여등 감사원 기능의 강화 등의 문제는 부패방지법에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따로이 정치관계법제의 개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부조직법, 각종 공무원법과 감사원법의 개정등으로 해결할 것을 염두에 두어 부패방지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별개의 운동에 의해 추진할 것임을 참고로 밝힌다.)

나.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의 방향과 요강

부패방지법은 부패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

부패문제는 각론적인 접근으로는 더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제로는 전면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기존의 흩어져 있는 부패방지법제를 보완 종합화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결여된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및 특별검사제등을 완비하여 단일 종합법으로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부정부패방지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극복한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후 전개된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을 보고 우리는 부패추방과 투명성보장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속출하고 있는 부정부패사건과 스캔들을 보면서 그와같은 한시적이고 일회적인 사정정책으로 우리의 부패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공직자윤리의 확립은 과연 가능한가? 그토록 꼼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물론 시민의 지속적 감시와 정부의 부패추방에의 지속적이고 단호한 의지등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제도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제외하고는 추상적인 청렴의무규정과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직사회의 부패에 짓어온 기존관행과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일소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외국의 입법례 중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까지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공직자가 200\$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비롯한 선물의 기준과 부정한 선물의 처리절차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안)은 특히 미국의 정부윤리법등을 많이 참조하여 뿌리깊은 부패관행과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가능한한 구

체적으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규정하였다. 어떤 선물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이 그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매우 꼼꼼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도 보완의 여지가 적지 않다. 우선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9인의 위원 중 4인은 내부인사이고 게다가 나머지 5인의 외부인사도 학식과 명망이 있을 것을 요구할 뿐 부패문제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때만이 재산등록제도의 좋은 뜻도 살릴 수 있으며 허위신고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안)에서는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인사의 비율을 6인으로 늘렸으며 부패추방 시민운동단체의 위원추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와 등록재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실사를 감사원에서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 재산등록의 엄정한 준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집안식구'들을 누가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하려 하겠는가.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자!

우리 사회에는 부패공직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렴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깨끗한 공직자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동료 또는 상사의 부정을 감지하거나 혹은 부정에의 참여 유혹을 받았을 때 이를 고발하는 것은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의의 호루라기'를 불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부서 또는 집단의 부정을 고발해 오는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부패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비호하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뜨리는 데 관전이 된다. 즉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보호될 때만이 공직사회의 부패의 시술은 끊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그 내부를 훤히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그것을 고발해 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 부정과 부패를 끊을 수 있으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패방지법(안)은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와 더 나아가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 등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써 부패방지의 커다란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돈세탁규제없이 부패는 사라질 수 없다.

돈세탁은 부정한 자금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노태우와 전두환비자금사건은 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돈세탁의 수법은 지능화되고 금융기관의 음성적인 협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적발하기는 거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세탁을 차별하는 법제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돈세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패방지법(안)은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법적 규범으로 확립되고 있는 돈세탁의 철저한 규제와 이의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안전판을 걷어치우고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한다.

부정부패의 적발과 징벌이 요구된다.

기존의 처벌법규만으로도 이를 엄정하게 지켜나간다면 어느정도의 부패척결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기존의 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부패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사회복귀제와 범죄수익의 철저한 몰수가 요구된다. 이에 부정방지법(안)은 부패행위를 세분, 구체화하고 새로운 부패범죄를 규정하였다. 부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규정과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범죄의 가중처벌, 뇌물을 주어 부패를 유혹한 중뢰자의 수뢰자와의 동일한 처벌규정 등을 두었다

각종 압력에 굽하지 않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1994년 공무원범죄의 경우 11.7%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최근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들어났듯이 이미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한 검찰이 부패척결의 공정한 기관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5·18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요구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와같이 엄정하고도 추상과 같은 수사기구의 확립 없이는 모든 부패추방을 위한 법제와 노력은 헛수고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만약 우리가 오래전부터 부패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검찰을 가졌다면 부패가 이 사회에 이정도로 만연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구성하고 여기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래 특별검사제를 요구해 온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부폐추방에서만이라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부폐추방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함으로써 검찰과 권한조정을 피함과 동시에 부폐방지특별수사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부폐를 제대로 처단함으로써 윗물맑기를 제대로 만들도록 아랫물도 자연스럽게 맑아질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외국의 입법사례

동남아 각국의 경우

동남아 각국에서는 단일한 부폐방지법이 일반화되어 있고 부폐문제에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싱가포르등이 투명한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부폐방지와 추방을 위한 법제의 개혁으로 나타났고 실제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폐문제에 대한 이같은 단호한 법제적 대응과 반부폐드라이브로 그나마 부폐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도의 부폐방지법(1947년)을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의 독직 및 부폐방지법(1961년) 대만의 부정공직자처벌법(1963년) 싱가포르의 부폐방지법(1969년)등이 그 예가 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부폐행위조사국이라는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관을 검찰과 별도로 두어 강력한 부폐척결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본 부폐방지법안은 이러한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부폐방지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미국에서는 정보공개법, 프라이버시법, 정부윤리법 중 특별검사규정, 공직개혁법 중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세금개혁법 중 정보공개조항, 상원윤리법, 하원윤리법등에 의하여 부정부패를 빈틈없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미줄같은 공직자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본 부폐방지법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서구의 여러나라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의 법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영국 역시 공공단체부폐행위방지법(1889), 1906년 부폐방지법, 1916년 부폐방지법등이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1989년 내지 1916년 부폐방지법이라고 한다. 이를 법제에서도 우리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조항은 도입하도록 노력하였다.

2. 주요골자

제 1 장 총 칙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 기업,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제2조, 제4조, 제5조), 그것이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 할 지언정 부패추방이 우리 시대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가, 기업, 국민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 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패추방 시민운동의 육성, 지원 조항을 둘으로서(제3조)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부패추방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조직화됨으로써 부패추방이 정권의 일시적 구호에 그치거나 상충부의 주도에 의한 한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제 2 장 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매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패방지법(안)에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지, 어떤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하여 단지 청렴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법 등의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제7조)

또한 공직자의 업무의 취업제한(제8조)과 업무의 소득제한(제9조) 규정을 둘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의 소득을 규제하여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제10조)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의 재적,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부패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발본하고 그럼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하였다.(제11조)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또 선물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선물등을 공직자 본인이 받는 경우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선물 등의 처리는 이를 신고 한 후 시장가격으로 반환,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물 등을 뇌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제12조, 제13조)

뿐만 아니라,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하였다.(제14조)

이러한 선물등에 관한 규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에의 취업제한규정을 존치하였으며, 퇴직공직자들의 친목단체등이 해당 부서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권을 도모하는 폐해를 금지하였다(제16조). 이에 더하여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하였다.(제19조)

제 3 장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이 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등에 관한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종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비판되어온 사항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손질하였다.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를 대폭 확대하였다(제20조). 특히 국세청, 관세청등 비리의 온상으로 의혹을 사온 기관의 경우에는 6급이상의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민원부서, 이권관련부서들의 경우 전 공무원의 등록이 바람직하나 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우선 6급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등록의무재산(제21조)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부정재산의 은닉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의무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예컨대 기존의 일천만원 이상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의 공정과 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였으며(종래 5인에서 6인으로) 외부에서 선임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추방시민운동단체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제27조)

등록재산에 관하여 허의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조사결과 부패방지특별수사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재산의 실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제25조 7항, 8항)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제31조)

제 4 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이 장은 참여연대에서 이미 입법청원한 바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 참고로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부정과 부패가 공모되고 진행되는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고발해 옴으로써 부패의 전모를 쉽게 파악하고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이와같이 부패추방의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래의 참여연대 안에 다만 그 적용대상에 있어 부패방지법(안)의 전체체계상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제40조). 이것은 공직자가 아닌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을 포함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정보제공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부패행위에의 가담 거절, 부패정보의 은폐에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 5 장 돈세탁 규제

돈세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번 두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제기되었다. 이른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및 그 시행령 등에서도 돈세탁규제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계좌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이 입법화되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위 긴급재정명령과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의 돈세탁규제는 민주당의 자금세정규제법(안)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민변) 안을 참고하였으나 민변의 안이 간명하고 본 법의 체계에 부합하여 민변의 안을 대체로 원용하였다. 다만 돈세탁의 대상범죄에 본 법상의 범죄를 추가하였다.(제54조제5호)

제 6 장 부패행위의 처벌

공직자의 부정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특가법의 규정이 주로 뇌물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의 직무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를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때에는 2분의 1의 가중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본 법의 본 장은 훌어져 있는 공직자의 부정범죄를 망라하고 일원화, 세분화시킴으로서 공직자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대만의 부정공무원처벌법과 싱가포르의 부패방지기본법을 참고하였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형량이 매우 높고 엄중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는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들은 대만의 예에 따른 것인데 대만의 경우는 형량이 본법안의 2배에 달함을 참고로 언급한다. 특징적인 것은 뇌물죄를 유형화하여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일반적인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 그 형량을 인상한 것이다.(제66조, 제67조)

주로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전 조의 죄를 범한 경우 기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제70조) 공직자에 대한 중죄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하도록 함으로서 부패의 미끼를 던지는 중죄자에게 엄중한 처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71조)

제7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 부정의 증거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비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73조 내지 제80조에서는 본법의 제2장과 제3장에 위배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자행동규범에 위반하거나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벌하여 제2장과 제3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81조에서는 본법상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제82조와 제83조에서는 방조와 교사범을 벌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교사범의 경우 형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정범의 실행착수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제86조에서는 이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제 7 장 불법재산의 몰수 등

공직자 부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부정범죄수익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을 원용하였다. 다만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특수공직자범죄에서 본 법상의 범죄를 추가함으로서 확대하였다.(제6조8호)

제 8 장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고(제137조)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둠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제141조)

교묘한 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을 부여하였고(제143, 144조) 대통령 직속하에 두어 강력한 수사를 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권리비리사건에 관한 대통령의 입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동의를 요하고(제140조)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제정신청제도를 확대하였고(제150조) 탄핵을 명문화하였다.(제147조)

제3부. 인간 이문옥

- 1. 인간 이문옥(각종 인터뷰)**
- 2. 자필서신과 가족의 인터뷰**
- 3. 격려편지 모음**

1. 인간 이문옥 (각종 인터뷰)

감사원을 '감사'한 이문옥씨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의 이문옥(50) 서기관이 사실상 백지화돼 있던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조사결과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과행적인 운영을 막자는 충정에서였다. 이 때문에 이 서기관은 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뒤에도 스스로 출근, 제보자는 자신이며

을 밝혀냈으며, 세무당국의 이에 대한 감시 역시 여러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한창 진행돼 가던 조사는 중도에 갑자기 중단 됐고 그동안의 조사결과는 묵살 됐으며 이어 12월말 인사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상급에 있는 과장·국장까지 '좌천'되고 말았다. 상사로부터 감사증단의 배후에 쟁

부인(46)이 전했다. 이같은 소신을 가진 이 서기관이 14일 다시 감사원으로 정상출근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이 서기관은 출근 직전 통화에서 "생각은 변함없으며 동료들이 충정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보도에 감사한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이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전 7시에 집을 나온 이 서기관은 하루일과를 거의 마칠 무렵인 오후 6시께 감찰실로 소환됐으며 이어 대검 중앙수사부로 연행돼 밤샘 조사를 받았다고 부인에게 알려

"과행적 운영 막기위한 충정 재벌로비등 배후에 실망...신문보도에 감사"

자신의 본뜻은 감사원이 올바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을 당당하게 주위의 동료와 상급자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기관이 23개 대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키로 마음을 먹은 것은 올해 초. 그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율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것

별기업의 로비가 개입돼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감사원기능의 독립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됐다.

이달초 <한겨레신문>에 조사 내용을 알려온 그는 지난 11일 기사가 보도될 때를 염두 휴가원을 계약하고 마음을 정리했다. 휴가를 떠나기 직전 중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아빠를 이해해달라. 우리나라와 감사원은 위해 한 일이다. 용서하라"고 다독거렸다고

왔다. 밤늦게 감사원 문앞에서 나을 때를 기다리던 부인과 아들·딸이 연행장면을 지켜봤다.

이 서기관은 고교를 졸업한 뒤 62년 총무처에서 공무원으로의 첫 발을 들여놓았으며 71년부터 감사원에 재직해왔다.

감사원 재직중 '간간한' 지원으로 알려졌던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가장 구적인 방법으로 과행적인 운영을 해온 감사원을 스스로 '긴사'한 셈이다. <이홍동 기자>

1990. 7월호

이달의 인물



이문옥 감사관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라는 감사원의 비리를 '감사'한 이문옥 감사관. 현재 그는 수번 3995번을 가슴에 단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체 그가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동기는 무엇일까? 그의 삶을 그의 부인과 주변인물들로부터 들어본다.

천호영(본지 기자)

공직생활 28년의 결단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라는 감사원의 비리를 '감사'한 한 감사관이 구속, 수감됐다. 그의 혐의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지각없는 직원 한 명이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는 내부문서를 언론

사에 알리고 감사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 마치 감사원이 외부 압력에 의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주장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 했다"는 게 감사원장이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에 직접 나서 밝힌 그의 '범죄사실'이다.

이씨가 언론에 제보할 당시 기자에게 전네준 '자필 메모'를 간추려 그의 본 뜻을 읽어보자.

"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역이 많이 있었고 성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얹고해지고 더욱 넓어지고 있어

생활의 4급 행정직 공무원이자 부인과 두 남매의 가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8월 감사원 2국 4과에서 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비리사실'을 언론에 밝힌 '범죄 행위'를 저지른 탓에 현재 수번 3995번의 '죄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씨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배신'하고 '수인의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천의 나이에 28년간 쌓아온 공직생활의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결단'을 한 데는 어떤 곡절이 숨어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은 이씨의 '범행동기'를 '인사불만'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 지난해 8월 과잉감사로 물의를 빚어 상사로부터 직접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지난해 12월 감사교육실 교수담당관으로 '좌천'된 데 불만을 품었다가 △ 올 3월과 4월 과장승진에서도 탈락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 이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과연 그럴까? 이씨의 부인 최중숙씨(46)는 검찰의 발표가 진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처음엔 괴로워하신 것도 사실이나 그 이유가 인사불만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곧 새 일에 적응하셨지요. 남을 가르치는 재미가 팬찮다면 어떤 날은 우리 아들도 교수를 시켜야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씨가 언론에 제보할 당시 기자에게 전네준 '자필 메모'를 간추려 그의 본 뜻을 읽어보자.

"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역이 많이 있었고 성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얹고해지고 더욱 넓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감사원 공무원으로서 죄송하고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몇몇 사례들을 국민 앞에 밝혀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인생의 전부"

전남 나주 왕곡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이문옥 감사관은 어린시절부터 가난이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학교조차 제대로 다닐 수 없었지만 늘 책을 가까이한 그는 독학을 하 다시피하여 고등학교(광주고 7회)를 졸업할 수 있었다. 중학교 졸업 때 우등상으로 받은 영한사전이 그의 유일한 참고서였다.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을 포기한 그는 군 제대 뒤 보통고시에 합격, 22살의 나이에 총무처 주사로서 공직생활의 첫발을 내딛었다.

부인 최씨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딸(17)과 중학교 3학년인 아들(15)도 두었다.

그의 가족들은 2년 전 개포동 공무원아파트(27평)를 분양받기 전까지는 '와룡동 1번지'로 알려진 명륜동 산꼭대기 달동네에서 전셋집 신세를 져야 했다. 처음 집에 들 당시에는 수도도 올라오지 않는 곳이었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1천만원을 용자받고 서야 가까스로 장만할 수 있었다.

어려운 살림을 살면서도 그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한다. 가난에 대한 오기였을까? 어쨌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분수에 맞게 살자'는 가훈을 가슴에 새긴 채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갔다.

71년 이씨는 총무처 생활을 마감하고 동기생 10명과 함께 감사원 직원으로 차출됐다. 그 뒤 오늘까지

19년 동안 그는 철저한 '감사원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일처리할 때 실수할까 염려하여 술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고졸 출신임에도 그는 75년 사무관 시험에 합격, 부감사관이 되고 감사원 생활 8년이 채 못돼 감사관으로 승진했다. 또 야간대학을 거쳐 최근 성균관대 행정대학원까지 마쳤다. 지난 78년 부감사관 시절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그의 유일한 욕심이라곤 공부뿐이었다. 1년에 절반 이상을 출장으로 집을 비우면서도 그는 집에 돌 아오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책을 읽거나 회계학 등 감사업무 관련 공부를 하는 데 쏟았다.

한마디로 그는 '타고난 감사관'이었다. 어찌먼 부인의 말처럼 그에겐 "감사원이 인생의 전부"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곬'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그는 상관이 싫어하지 않는 비리만 밝혀내는 '명감사관'이 되기에는 '옹통성'이 전혀 없었다.

"다른 곳이 썩더라도 감사원만 깨끗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는 결국 감사원을 '감사' 함으로써 또 다른 '명감사관'의 길을 택했다.

'나라와 감사원을 위해 한 일'

5월 11일 "감사원 관계자의 증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씨의 감사내용이 신문에 처음 보도됐다. 그는 휴가원을 제출하고 마음을 정리했다. 설악산에도 다녀왔다. 그리고 아들을 조용히 불렀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나라와 감사원을 위해 한 일이다. 엄마를 잘 위로해주고 아빠를 이해해달라. 그리고 절대 기죽지 말

고..." 그의 아들은 약속을 지켜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차지, 슬픔에 잠긴 이씨의 부인에게 새 기운을 불어넣었다.

월요일인 14일 아침, 그는 출근 직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각은 변함없으며 동료들이 충정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보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전 7시에 집을 나온 그는 감사원에 출근, 제보자는 자신이며 자신의 본뜻은 감사원이 올바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을 주위 동료와 상급자에게 밝혔다.

이씨는 감사원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30분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넘겨졌다. 뒤늦게 9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달려온 아내와 남매가 그의 연행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철야조사 뒤 곧바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이씨는 근 30년만에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맞아 맘껏 책을 읽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다시 시작한 단전호흡으로 건강도 더욱 좋아지고 있다. 매일 면회를 오는 부인을 만나려 나갈 때와 운동시간을 제외하곤 1평 남짓한 공간에 흘로 있어야 되지만 그곳엔 '재벌의 로비'도 '청와대의 압력'도 없다. 며칠 전 직위해제 통지를 받고 허탈감에 빠졌던 기운도 이제 다시 되찾았다.

공직생활 28년 중 감사원에서만 외길 19년.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외로웠던 나날, 그러나 그는 더이상 외롭지 않다. '썩지 않은 사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그를 응원하고 있으므로.

"이문옥 감사관을 석방하라!"

■

90. 7. 14

제 2 장 『동양학』과『까지』의 출현

財閥 땅 감사하며 공개하기로 결심
구속자 오미리 단천호흡 배웠다



기족품으로 석방된 李文叔전집사판이 13일 오후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미중 나간 부자녀를 두딸로 안은채 활짝 웃고 있다。 <奏秀覽기자>

洪淳剛·崔英勳著

“무죄판결을 믿고 있다”

李文玉씨 특별기고 /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부당한 지시에 항거할 수 있어야

이 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 소됐던 李文五(50·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6차아파트 7동 104호) 전 감사관이 지난 13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보내온 것이다. 감사원에 들어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정리한 이 글에서 그의 제보동기 및 감사관으로서 지녀왔던 소신을 염불 수 있다.

충무처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내가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은, 72년 감사원에 신임 원장이 취임하면서 인사를 단행한 결과 80여명의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를 대체 짓뛰어 기회가 났다. 예산장승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부감사관 자리가 몇개 늘어난 것이다. 나는 승진시험에 운좋게 합격, 부감사관이라는 직함을 갖게 됐다.

면접장에서 청백리상을 받았다는朴모사무
차장이 "감사원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이냐"고 물었다. 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취해진 징계가 미진해 징계가 풀려버리거나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좀더 깊이있는 감사를 해 이런 잘못을
예방하고 싶다"는 요지의 대답을 했다. 면접
을 통과, 발령이 난 것은 그해 6월29일이었다.
감사조사차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는데, 당

시에도 감사대상 관계자들은 감사반원들의 속박비나 식비를 결사적으로 지불하려 들었다. 물론 이런 인사치례를 거절하는 것은 감사반원들의 기본철칙이었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집요한 '접대공세'를 막아내야 했는데 이같은 '악역'은 주로 내게 맡이지곤 했다.

이처럼 감사대상과 싸름하기를 3년여, 어느 날 내게 뜻밖의 기회가 왔다. 여전상 승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부감사관 자리가 몇개 늘어난 것이다. 나는 승진시험에 운좋게 합격, 부감사관이라는 직함을 갖게 됐다.

감사하기 까다로웠던 조직으로는 경찰을 품을 수 있다. 그쪽에서 압력을 넣어서라기보다는 감사원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불리 건드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상사들이 무서워하는 조직들에 대해 겁없이 감사를 실시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처럼 꽈 마흔(?) 업무태도 때문이었는지 나는 안팎에서 '안 통하는 사람'으로 낚아이가 쪘던거다.

5. 공시적 비리 캐내으나 무산돼

그럭저럭 지내다 82년 나는 드디어 서기관이라는 자리에 앉게 됐다. 동기들과 비교할 때 그리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승진 속도였다. 하지만 김사관으로서 또 한번 좌절을 맛보게 해준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86년 해외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경환씨가 새마을운동의 실적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아르헨티나 장관을 초청하면서 그 경비를 해외개발공사에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외개발공사는 25개 국영기

업체 중 재정이 가장 빈약한 기관이었다. 나는 광장과 상의해 보고서를 작성, 사무총장에게 중요사항을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후 국정감사 때 해외개발공사 직원에 의해 폭로됐다.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낮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88년에는 서울시 등의 이미 소개된 의문점들을 발견했으나 뜻대로 헤나갈 수 없었다. '감사원은 최후의 보루인데 과연 아래도 될 것인가' 하는 회의와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89년 5월, 2국4과로 발령이 난 뒤였다. 총장의 결재까지 받고 2국4과 광장이 반장을 맡아 6월부터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내 각 시·군의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실적과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세 실적 등을 비교, 36개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그런데 결재를 올린 과정에서 광장이 짜고 대신 내가 감사반장 겸 1조 조장직을 맡게 됐다.

1조의 감사대상은 주로 삼성 계열사 관련 세무서였다. 감사는 8월 16일 시작됐는데 26일 갑자기 감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광장의 말인즉 내가 "인동을 나쁘게 하면서 무리한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곧 광장·국장·총장에게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총장은 "이상태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를 못 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를 받은 법인과의 형평을 위해 담당자들과 협의한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그후 내 명의로 광장과 전담감사관이 상의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이며 "감사자료로 하겠다"고 쓰여 있던 보고서에 나는 "이건 총장 지시다"라고 크게 써넣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나는 출장자 명단에서 계속 누락,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서도 출장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삼성은 못하고...선경은 하다가 빠지고..." 하는 등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해 9월부터 나는 여론을 형성하여 워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감사원 위상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는 감사원의 두 기능 중 회계업무만 남겨놓고 감찰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터라 언론에 제보할 시기로는 적당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외풍에 혼들리는

감사원의 실태를 터뜨렸다는 감사원 전직원의 회망인 '직제화장'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 했기 때문이다. 12월 드디어 감사원 직제가 확장되고 그날 말에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때 교육실로 발령나는 바람에 나는 발표시기를 또 한번 늦춰야 했다. 차차 인사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인사불만'으로 몰고갈 땐 나도 모르게 홍분

또 한 가지 발표시기를 늦추게 된 이유는 우습지만 겨울 감옥살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외부에 발표할 경우 감옥행은 편한데 유독 추위에 악한 내가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올 1월, 내각책임제에서도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들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을 알고 나는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2월

온 편해지지 않았고 가족들 생활에 짐을 못 이루었다. 14일 출근해 동료와 상급자에게 내가 한 일의 동기를 밝혔다. 이를 날 구속되기 전 석간신문을 보니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구속영장의 내용도 기가 막혔다. 항의했지만 "당신만 조사한 게 아니다"라는 대답뿐이었다.

수감된 다음날 독방으로 옮겨졌다. 나의 수감 사실을 안 재소자들이 "이문옥감사관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기가 괴로웠다. 구속생활증 별 어려움은 없었다. 89년 4월 감사원내에 신설됐던 단전호흡수련장에서 '감옥행'에 대비, 남보다 열심히 훈련을 한 덕분일 것이다. 밥은 억지로라도 다 먹고 하루에 30분씩 주어지는 운동 시간엔 쉬지 않고 뛰었다.

5월 23일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나는 검사가 나의 제보동기를 단순한 인사불만으로 몰고가는 데 홍분,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새로운 사실들을 털어놓고 말았다. 계획에 없었으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못 한 내용이었는데 그날 언론에 대해서 특별된 것을 보고 나는 일이 크게 터졌다. 사실을 적감했다.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실망은 커지만 변호인단에게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1차 공판이 열렸던 6월 28일 검사가 또 다시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질문을 하고 담당판사도 나의 진술을 자주 제지해 재판부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져버렸다.

도는 되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5월 4일 양심선언이리도 할 작정으로 집사람 몰래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내 휴가날짜에 맞춰 11일자에 기사화하겠다는 전갈이 왔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이미 보도된 대로다. 나는 10일 감사원에서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이를 전 임수술을 받은 채 죽음을 앞두고 있던 친척동생의 병문안을 갔다.

집에 돌아와서 시험공부를 하던 딸애(고2)에게는 얘기 못하고 아들(중3)에게만 "아버지에게 일이 있을 것 같다. 감사원과 나라를 위해 한 일이나 의연히 대처하라"고 당부한 뒤 집사람에겐 '시끌에 3일 다녀오겠다'는 쪽지를 남겼다.

강릉으로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집에 전화를 했지만 행선지는 밖히지 않았고 도착해서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집사람과의 직접 통화는 피했다. 그러나 신문보도를 본 뒤에도 마

"떳떳한 행동에 푸른 죄수복이리니"

1990. 05. 19.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 가족 주변

감사원의 재벌기업 비업무용 토지 보유현황 실태 조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문옥(50) 감사관의 가족들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변고'에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이 감사관의 행동이 뛰어났다는 굳은 믿음 속에 의연한 태도를 잊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 공무원아파트 이 감사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고 이번 감사원 보고서 공개 전에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충격받지 말고 공부 잘하고 엄마를 잘 위로하라"고 이야기했다며 아들·딸은 울먹였다.

가족들에게 주변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안은 큰 힘이 되고 있다. 같은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감사원 직원 식구들이 음식을 해 날라오기도 하고 감사원 동료·후배들의 위로전화도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 직원들의 전화는

30년만에 마련한 아파트서 눈물로 밤새워 "누군가 해야 할 일" 동료등 위로전화

관 집에는 부인(46)과 고교 2년의 딸(18)·중학 3년생인 아들(15) 등 세 식구가 계속 걸려오는 위로전화 속에서 아직도 두근대기만 하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이날 오후 남편을 면회하고 돌아온 부인 최씨는 남편이 "집 식구들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지만 나라를 위하고 감사원을 위해 한 뛰어난 일이라 결코 기죽고 살지 마라"며 오히려 자선을 위로했다고 전했다.

부인은 "그이 말대로 남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것도 아니어서 뛰어하고 오히려 자랑스럽

한결같이 "누군가 언젠가는 한번 해야 할 일을 이 감사관께서 용기있게 하셨다" "남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 십자가를 혼자 지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어서 이 감사관 구속사태 이후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기류의 일단을 엿보게 해준다.

이 감사관 가족들의 가장 큰 바람은 하루빨리 그의 명예가 되찾아지는 것. "감사원 자료를 공개한 일이 결코 국가에 해악을 끼친 일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감사원을 위한 훌륭한 행위였음이 명명백백히 확인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김종구 기자>

한겨레 90. 5. 19

2. 자필서신과 가족의 인터뷰



감옥간 남편 대신 '용감한 공무원상' 수상한 이문옥 감사관 부인

최중숙

“내 남편은 양심의 채찍질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월 90. 7월

‘권력층의 은폐 기도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벌 부동산 투기 실태와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권리 수호를 위해 권력에 과감히 맞서 일어선 이 문옥 감사관에게 온 국민의 이름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비록 그는 영어의 몸으로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지난 6월 7일 평민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연합에서 주는 ‘용감한 공무원상’을 부인 최중숙 여사가 대신 수상했다.

처음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최중숙 여사의 얼굴은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를 지지하고 가족을 염려해주는 많은 민주시민들에 대한 감사로 빛나고 있었다.

“그분이 구속된 후 처음 경실련 주최의 국민대회가 열렸을 때는 감

히 나설 수도 없었어요. 그저 시부 모님이 누워계신 천안 풍산공원묘지로 달려가 아들을 빨리 석방시켜 주십사하고 빌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사안 자체도 위낙 정치적인 것이라 충격이 컸고 두렵기도 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쉴 새 없이 걸려온 전화는 모두 위로와 격려의 말 뿐이었다.

“동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었다고 위로 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부인은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 도시락을 싸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락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이 파는 물건을 들고 찾아왔는데 미안한 마음에 거절했더니 며칠후 밤을 새워 두 자녀 앞으로 썼다는 편지가 날아들었다.

경실련 측에서는 두번의 석방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가족돕기 바자회를 열었고 한겨레신문에서도 가족돕기 성금을 모금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웃들의 당부처럼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경황이 없는 중에서도 전교 일등을 해 엄마의 마음을 한없이 따스하게 했다.

최중숙 여사의 하루 일과는 남편을 면회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일 남편의 친구들이나 경실련 관계자, 법조계 인사들이 동행해주는데 안그래도 흰 피부의 남편 얼굴이 더욱 창백하고 수척해 보여 안쓰럽기 만하다.

“그래도 아빠는 항상 웃는 얼굴이세요. 옳은 일을 하셨다는 철저



경실련 주최 이문옥 가족돕기 바자회에 참석한 최중숙 여사가 격려해주는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면회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신념 때문이겠지요. 곧 풀려나갈 수 있을테니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특히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 뿐입니다.”

평소에 남을 돋기 좋아하고 경조사에 앞장서던 이문옥 감사관인지라 교우관계가 특히 넓고 돈독하다.

경실련, 인권변호사협회, 각 언론사는 물론 그의 광주고등학교 7회 동기동창을 중심으로 한 선·후배, 그리고 감사원 동료들까지 석방을 위해 열심이다. 사회적으로 비중있는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국회에서, 법조계에서, 그리고 매스컴을 상대하며 그의 용기있는 행동을 비호하고 있다.

“아빠의 감사관 선배이자 친구분이 구속되기 얼마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좋은 묘자리를 얻으려 사방으로 애쓰고 얼마나 정성껏 장례를 치렀는지 그 부인되는 분이 너무 고마워 평생 아빠를 의지해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목놓아 울었어요. 아마 저 다음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문옥 감사관은 평소에도 ‘모두들 양심은 갖고 있으나 그 양심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무사안일 한 직책 수행과 양심의 채찍질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번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도 양심을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셨을 거예요.”

지난 62년 총무처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71년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겨 19년동안 일해오는 가운데 이문옥씨는 ‘용통성이라곤 없는 직업감사관’ 소리를 들었고 78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책 읽는 일로 보내는 독서애호가였고 자녀들에게도 항상 자기 분수 이상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젠 웃을 수 있고, 용기 있는 아빠의 행동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그저 몸 건강하게 빨리 석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중숙 여사의 변화를 보면서 이젠 우리 사회도 최소한 용기있는 행동에 갈채와 성원을 보낼 만큼은 성숙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3년을 끈 재판의 무죄판결,
꿈인가 생신가

1년
커튼콜

93.10월호

경실련 알뜰가게에서 일하는
이문옥 전 서기관 부인
최중숙

“나고생은 더해도 좋으니 남편만 복직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감사원 사건' 이후 크나간의
지리한 재판, 살리이라도 어느 청비한 생활에 그의 구속은
더 힘겨운 생활로 다가왔다. 두 아이들과
치매증을 아는 노모 남편을 곧게 미어지마
외면하는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사무치도록 외로었다는 최중숙씨

글/윤혜성(자유기고)

“사실 판결을 듣는 순간, 이게 꿈일까 생실까했어요. 3년을 끌었던 재판이라 지칠대로 지쳐서 그 날은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로 정신이 빙쯤은 나가 있었는데 젊은 판사의 무죄판결이란 소리가 들리는데 멀리서 아득히 단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으며 확인을 했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상상도 못 할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르르 녹는 가분으로 온 몸에 맥이 쭉 빠져서 다른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데 전 꼼짝도 못했답니다.”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지 눈빛부터 아련해진다.

동호대교를 바라보고 장충체육관 건너편의 조그만 골목에는 깔끔한 간판 하나가 눈에 띈다. 이름하여 '경실련 알뜰가게'이다. 일반인이나 제조업체에서 기증받은 중고물건부터 새것에 이르기까지 의류와 어린이도서 핸드백, 벨트, 지갑, 신발등 수많은 상품이 간지럽히 진열돼있다. 많은 사람들이 봄비는 가게는 아니지만 알뜰구매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곳이다. 물건을 사느라 수선스럽지도 않고 많이 팔려고 장사속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조용한 가운데 거래는 줄을 잇는다. 그중에도 넉넉한 표정, 공손한 태도로 시종일관 손님들을 대하는 중년주부 한 사람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한 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나 궁금해지게 한다. 사실 알고보니 그럴만도 하다. 바로 감사원의 비리를 양심선언을 통해 세상에 알린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얼마전 무죄선고를 받은 이문옥씨의 부인이다.



되면 더 바랄게 없네요”

명륜동 산파대기에
남편과 함께 내손으로 지은 집

최중숙씨.

올해 마흔여덟살로 지난 90년 5월 11일 남편 이문옥 서기관이 양심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무단히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경기도 평택이 고향으로 이문옥씨를 만나 72년 결혼해서 18년 동안은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이외에는 다른 일에는 눈길 한번 안주었던 생활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천성이 수줍은지 중년에서 느끼는 조금은 훌어진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세월은 너무 평범했어요. 결혼해서 명륜동 집 지은 다음 10년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개포동으로 와서 2년동안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낸 게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터진거죠”

목포출신의 이문옥 씨는 누님 다섯분의 장남으로 한명의 남동생은 이민가서 살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총무처 주사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분이야 자신의 신념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 말예요”

오직 표현의 복지, 이人们的 문화의 상처회복을 바랄뿐...

실제로 최중숙씨와 남겨진 첫딸과 외아들 상준은 그날부터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 며칠은 이웃의 따뜻함이 다소 위로가 되었지만 1주 일쯤 후부터는 발길이 끊기고 동네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칠 때는 무서움마저 느꼈다고 한다.

“정말 외로웠어요. 사무처더라고요. 연일 TV에 선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작 주위엔 아무도 없어 당그러니 세식구만 남았거든요. 사실 저축할 여력도 없었고 매달 월급으로 그럭저럭 살았기에 당장 한 달이 지나니까 끼니걱정이 닥치더라고요. 다행히 여러



곳에서 성금도 보내주시고 셀도 보내주셔서 살았습니다. 정말 멀리서 애써주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최중숙 씨는 요즘엔 그나마 월급에서 떼었던 연금 분과 경실련알뜰가게에서 받는 약간의 보수로 생활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대선 때 광주동구에서 출마했던 선거에 대해서 묻자, 1천명의 서명서를 갖고 찾아온 광주분들의 권유로 출마했지만 국회의원에는 뜻이 없었다고 한다.

“전 국회의원보다 빨리 복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그걸 더 바라고 있어요. 행정재판도 판결만 남은 상태니까 곧 결정이 되겠죠. 물론 아시겠지만 검찰에선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원심에서의 판결은 결코 쉽게 변복되지 않는다는 걸 기다려 볼 수 밖에요. 아침이면 제가 여기 나오고 남편은 집에 있으니 거꾸로 세상을 사는 것 같아 하루속히 복직이 되어서 남들처럼 출근하는 남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행복한 시절이 또다시 올 것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신했다가는 무너지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한다. 아직도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 그저 남편을 믿는 마음 이상의 신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다는 최중숙이다. 그렇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남편의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실망한 적이 없기에 마음 속으로 남편의 용기가 자랑스럽고 언제 까지나 함께 이길 각오를 다진다.

“그리구요. 이번 일로 상준이가 통 말을 안해요.

성적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고3이니까 시간이 없어서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조금 마음이 쓰이거든요. 대학에 입학하면 말문이 좀 트일까 기다려 볼 뿐이죠. 남편의 복직과 함께 당장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예요”

자원봉사자들과 하루 종일 일뜰가게에서 친절을 다해 손님을 맞는 최중숙씨의 묵묵한 모습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문옥 씨의 용기와 원동력을 엿볼 수 있었다.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감시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민과 정치자들에게 제시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감옥 생활도 했고, 페인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원장과 같은 곳은 대법관출신이 감시원장에 부임하게 되었고, 4명의 감시원 국장급들이 승진하여 2명은 차관급인 감사위원으로, 1명은 차관보급인 사무차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순리의 인사입니다. 이로 인하여 죄원장의 부임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죄원장께서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 축하 속에는 국민들의 부푼 기대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원장께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데 성과를 쓴다는 부탁의 마음과 정성을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 기대감인 것입니다. 저는 죄원장께서 감사원의 위상을 재정립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데 앞장서실 것으로 믿고, 그 일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죄원장께서는 감시원장 판재에 입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첫 이유는 감사원장이 판재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원장이 판재에서 살아야만 시정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 2월 하순께 동일보 기사를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 호화 판자 국민정서 위배 눈총”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구기동에 있는 판저의 대지가 1천여평이나 되고, 판인이 수 명씩이나 템을 적시한 후 감사원장은 의무부장관처럼 의빈을 조성하여 연회를 열기도 있고, 각계 인사를 접견할 일도 별로 없는 직위이므로 판재에서 살아야 할 당위성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감사원장은 단 한푼의 국고라도 절약시켜도록 시정활동을 지휘해야 할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관저운영비만 낭비한다는 비난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판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70년대에 검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다른 부처의 장관 판재와 함께 감사원장의 판재를 신축하던 중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포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결정은 감사원장의 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장이 판재에서 생활하면 감시원의 감시활동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감사원장의 판재가 80년에 마련되어 그때부터 두 분의 전임 감사원장이 살았습니다만 그 이후 감사원의 시정활동이 그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감사원장의 판재 취득 경위부터 항거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에 3번째로 부임한某감사원장은 5공정부 시설 정부소유의 판재에서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무임허지마자 감사원장의 판재를 마련하는 저지를 내린 것입니다. 그때 감사원 내의 소문에 의하면 당시 감사원장의 판재마련 지시를 받은 간부들 중에 어떤 분이 '70년대의 판재 신축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함을 건의했지만 체택되지 아니하

신임 감시원장에게 드리는 편지 |

이 | 고 | 육 |
(제작자)

우선 죄원장에게

녕하십니까?

안

우선 죄수를

前대법관께서 신임

감사원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

하합니다. 죄원장께서는 사법부에 체직하

는 동안 강직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

습니다. 또한 소신 있는 법관으로 널리 알

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국민

들 중에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를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죄원장을

맡아야 할 책임자로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前대법관께서 감시원장으로 내정되

었다는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원장을 공

직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의 적임자로 확인하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년 10개월 전인 1990년 5월 22일 한겨레신문 제2면을 보면 죄원장 같은 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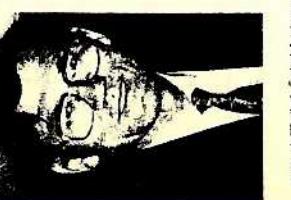
감사원장으로 기다리는 국민이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원은 목숨을 걸고라도 부정

불의와 죄악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은 외부세력에

굽히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으며, 역전의 의사도 없는 곳은 대법관출신 인사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직원 등 보직도 감사원의 국정이 영전하는 자리로 만들어 외부인의 영입에 따르는 의통을 막고, 감사원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라는 체가 감옥에 갈 위험과 고통처분



光州 東區에서 '시민후보'로 출마, 낙선.
나리사랑 양성언자 모임, 결성 활동.

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지시가 더욱 강화해 체무부의 협조를 얻어 관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체무부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관저마련 요청을 받고 국가가 물수한 바 있는 김형우 前안기부정의 자택(성북구 삼선동 부근)을 관저로 사용하도록 감사원에 판지전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원장께서 그 집을 관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감사원은 관저 지을 대지와 관저를 신축한 후 김형우 층과 교환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종로 구 구기동에 대지를 물색하여 모 건축업자로 하여금 취득케 한 후 건축업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그후 건축업자 명의로 된 주택을 전시 김형우 층과 교환하는 형식을 거쳐 감사원장의 관자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권력을 이용하여 관자를 취득한 경위를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원장의 관자는 국민들로부터 그 필요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취득경위도 우려다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자를 국기에 반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감사원이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의 지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일명 「상보」라는 것이 그렇입니다. 감사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불구하고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의 열쇠석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원장은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의 열쇠석에 앉아 있는 내용을 TV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비쳐졌습니다. 전임 감사원장을 파격의 감사원장을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전례를 깨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원의 적이 올라간 것으로 착각을 해 수도 있으나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스럽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대다수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데어 있고,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있어 감사원의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장께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감사원이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증속기 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원장께서는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는 일을 산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자주 보고하는 것도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 상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 칭찬을 받을까, 구중을 들을까에 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받는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사안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용까지 감지하였을 때 그 영향이 감사원의 전 직원에게 파급되지 않겠습니까. 중전의 감사원장 등 어떤 분은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수시로 보고하였습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부터 해마다 5회 내지 10회 정도로 「수시 보고」라고 하는 「상보」를

“우선 대자가 1천여명이나 되고 관리인이 두명씩이나 되는 감사원장 관저에 입주하지 마십시오, 단 한푼의 국고라도 절약시켜도록 사성활동을 지휘해야 할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대통령은 그때마다 「수고했소」 「잘했소」라는 격려의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감사원장은 보고를 마치고 청와대를 나오면서 다음에 보고할 거리를 찾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일도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 직원이 감사한 내용 중 「상보」거리로 체택되었다 하면 그 담당자는 높은 평점을 받고 직원들에게 공람되는 등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급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성역 없이 감사를 하겠다고 아무리 와쳐보았자 국민들이 믿지 않고, 감사원 직원이 믿지 않으며, 공무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보」가 감사원을 청와대 종속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장께서는 「상보」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이 새로 헤어나야 합니다. 6·29)라고 하고 김영삼 정부라고 하는 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원이 63년 3월 20일에 발족되었으나 금년으로 30년이 됩니다. 그 30년 동안에 감사원장들의 경력을 보면 28년간은 군사·국제·민족·학자·국지지자 또는 대통령의 사정특별보좌관들이 세직하였고, 2년간(80년부터 82년)만 학자 출신이 세직했습니다. 학자 출신이 세직한 2년 동안에도 감사원의 실권은 군인출신의 사무총장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총장은 현령감을 거쳐 안기부 감찰실장, 국보위 사장 위원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5·18군사쿠데타 후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직하다가 학자 출신 감사원장의 부임과 거의 동시에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총장으로는 5공 이후인 80년대 이후만 말씀드리면 안기부 국장·안기부 감찰실장 등 5명, 육사 18기 출신으로 경호실장으로 제임하였던 분은 1명 등 6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기관과 대통령측근들에 의하여 감사원이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잘못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원 창립 30년 만에 이원장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이 파격의 같은 운영에서 탈피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구성원은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추원장과 감사위원 한 분만 비되어 있을 뿐 중견간부급 이상이 모두 과거의 원장이나 시무총장 밑에서 근무해온 사람들을 육식이 가려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추원장께서 파격의 기득권세력이 길러놓은 중견간부들에 포위당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중견간부들 중에는 그 동안 파견 또는 전출 등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감사원에 복귀하여 「서우회」라는 사조직을 키워가면서 힘을 과시하는 분들도 있고 국보위에 파견나가서 5·18군사쿠데타로 터어난 5공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대통령이나 기득권총파 일파에서 일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신임 추원장의 방침에 쉽게 동화될는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원장께서 아무리 성역 없는 감사를 하고 싶지만 실제 감사를 치화하는 사람은 그런 중견간부들입니다. 감사를 힘에 있어서는 이들이 감사원장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물째는 이기적 자기증심 생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퇴케 한 국민들의 생각은 파격의 질투를 용서하지 못해 서가 아니라 앞으로 개혁을 주도하면서 그런 자기증심에서 추진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 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실시한 감사원 중견간부들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감사를 하여 부정부패를 추방해줄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추원장께서 개혁을 갈구하는 국민정서에 맞는 변화를 일으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사활동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부서와 회계감사 부서를 구분할 것이 아니고 통합하여 소집주의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직제는 감사활동 부서로서 6개 局 28개課로 되어있고 1개국이 직무감찰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개에 15명 내외의 직원을 치고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소과주를 치고 하여 파악하여 과장이 책임을 치고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소과주

“금년에 먼저 감사대상의 성역기관으로 알려진 청와대와 안기부부터 감사를 시작한다면 다른 10개 기관을 감사한 것보다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이 시정활동을 잘못한 이유를 역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들의 경력에 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원이 63년 3월 20일에 발족되었으나 금년으로 30년이 됩니다. 그 30년 동안에 감사원장들의 경력을 보면 28년간은 군사·국제·민족·학자·국지지자 또는 대통령의 사정특별보좌관들이 세직하였고, 2년간(80년부터 82년)만 학자 출신이 세직했습니다. 학자 출신이 세직한 2년 동안에도 감사원의 실권은 군인출신의 사무총장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총장은 현령감을 거쳐 안기부 감찰실장, 국보위 사장 위원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는 5·18군사쿠데타 후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직하다가 학자 출신 감사원장의 부임과 거의 동시에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총장으로는 5공 이후인 80년대 이후만 말씀드리면 안기부 국장·안기부 감찰실장 등 5명, 육사 18기 출신으로 경호실장으로 제임하였던 분은 1명 등 6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기관과 대통령측근들에 의하여 감사원이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잘못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후 감사를 잘못하는 곳장에게는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감사는 과거에 성역시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과 업무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감사대상의 성역기관은 청와대와 안기부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원에 그 두 기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그 성과를 확산한다면 다른 10개 기관을 감사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종전처럼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나 감사를 하고 그 성과를 수수료로 수는 공직자를 문체·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국민들은 또 실망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청권마다 부정부패 추방을 얼마나 많이 활용해왔습니까. 5·16군사쿠데타 유산 선포도 5·18군사쿠데타도 모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다. 권력을 쥐거나 그들과 함께거리가 된 기관이나 사람들은 성역으로 세차놓고 힘 없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처벌을 사람을 학대하는 등 보통 때 같으면 경고나 받을 사람을 문제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직자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까지 꽁꽁 얼어붙는다는 것을 알고 한 사

체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공직사회는 친비리 날 정도로 「하시금」봉투를 들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3만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후 부정부패가 추방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충격요법은 물론 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원장께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피거의 성역이라고 했던 기관과 업무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시기를 기원해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격려편지 모음

1990. 5. 26.
이연주 목사선 기도

이문옥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눈만 감으면
이웃의 허기진 고통 아랑곳 않고
오직 내 곳간 가득 채울
주문 외대기에 급급한
욕심 많은 제게도, 이번만은
어려움 당하는 이웃 향한
솟구치는 연민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당신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총체적 난국이라 일컬어지는
오늘의 혼미 속에서
가냘픈 입김에도 가물거리는
작은 촛불로 거대한 시대의 어둠에 맞선
이문옥 감사관,
이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벌들 제 배불릴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던 비업무용 부동산이
무려 43.3%나 된다는 사실에 접하고는
은행감독원이 진작 발표한 1.2%와의
엄청난 괴리 속에서 고뇌하던
그의 순수한 마음은

시집: 하나님,
상신은 아닙니까.
도어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 잠든 민중들에겐
여명의 닭소리였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 땅의 과렬치한 투기행위를
천국의 비밀인 양 감싸쥔 채
출세와 보신에 눈먼 위정자들의
압력 뿌리치고 입을 연 그의 모습은
마비된 양심을 일깨우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
그대로 였습니다.

수갑에 묶인 채
감옥으로 향하는 그의 풍채 속에서
전장을 향한 병사의 비장함보다
개선장군의 당당함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땅 없이, 집 없이 사는 사람들,
가장을 빼앗긴 가족들,
아직 숨죽이고 있는 침묵의 동료들,
그리고 시대의 예언자를 재판할 사람들,
그들 모두를 들보시옵소서.
아멘.

李文玉先生貴下。

처음뵙겠습니다. 한마디로 빛나오지 못한
先生님께 무례한 편지를 올리게 되는 온서
하여 죄송시오.

이는 中國吉林省延邊에서의 仁和金鐘
입니다. 吉林省延邊大學老干部處에서
일하고 있으며, 住處는 吉林省延邊市.
推拿 235.52段 5 층에 仁和 0433-539155입니다.

제1차의 친구인 林復民 선생과 제
博覽會參觀으로 訪韓한다고 하기 이전에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실은 우연한 기회에 先生님께서 보신 후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를 봐서 되었으며
그 후 여러 기회에 新聞과 雜誌 등에 게재된
先生님에 대한 기사와 «경인련»活動 자료
들을 보는 과정을 통하여先生님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公車에 28년의 畢業과 그에 따른
424回 2012 10월 가족의 家庭 아래

학생시기면서 藤田茂을 교양하고 社会正義를
교수하면서 대학여 茂이 강등되었으니 마음속
으로 우리 尊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훗날 2012한 豐南을 4121기 까지에는
같은 고초와 시련을 겪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는 道外에 사는 律師는 懷孕의 한 사람으로
다른 동포들과 生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現在先生님께서 알아보시는 «경인련»
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대체로 알고 싶어졌
으며, 「부要하다면先生님들의 善事」에 대해 하나
의 기여하는 데는 생각이 든다. 여기 이 편지를 쓰
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제의들이 «경인련»을 드렸을
것은 물론이며 있다면 그 내용과 함께 그1단
단이 말씀해 주십시오. 2012 «경인련»에
관행하는 자료들을 계통적으로 구독하였으면
합니다. 듣건대 «경인련 자료회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가입하면 «경인련»
자료를 우편하여 주고 하는데 해외에 사는
仁和GA0385 1993.5 1 第 页

서울도 청가호는 있는지요? 경기도에 청가
발명 食費等手續事項을 살펴 주세요
답례.

그러나, 최근에는 사는 교포들의 주거의 경향이
전통적-문화적인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2015년 모여
온 가족 한 번에 묵는 경우 60% 미만의 비율로 감소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체로 2014년 대비 흙의 농지
수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인신문>은 2014년 1월 26일자로 「
성현에 빛을 드려, 풍물무역을 면밀하게 안내하는
방법」이나 <경인신문>은 2014년 3월 20일자로 「
흙-에 대한 글을 쓴다. 모자 / 흙의 농지」

9/4/10) 회하여 강우원을 만나고 그의 책을 살피는
스러운 역사에 흥미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이쪽 하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책, 그가 좋아하는 책, 그가 좋아하는 책
을 저술한 것이다. 그가 좋아하는 책, 그가 좋아하는 책, 그가 좋아하는 책
한 권 하는 책이다. 그가 좋아하는 책, 그가 좋아하는 책, 그가 좋아하는 책
하는 책이다. 그가 좋아하는 책, 그가 좋아하는 책, 그가 좋아하는 책
하는 책이다.

우선 방한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仁和GA0385 1993.5 1 第 頁

같이 풀풀하게 펼쳐으면 좋으리겠습니까.
가을한가을이 되었으면 어떤 맛나서 기대하는
시야가운데 누가 좋습니까.

26/01 01/02 26/01 26/01 26/01

先生님께서 2012년 7월 25일에 7125호 10층
사진에서도 보았던 그 옷을 입으셨습니다.

※ 삼기 면가지 G211번 (A한 회답을 대체)

1993-9月10日

九元金童上